

②이 法 第3條 내지 第8條의 罪를 犯하거나 犯하려는 者라는 情을 알면서 金品 기타 財產上의 利益을 제공하거나 潛伏 · 會合 · 通信 · 連絡을 위한 場所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方法으로 편의를 제공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다만, 本犯과 親族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1·5·31>

③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④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⑤削除 <改正 91·5·31>

第10條 (不告知) 第3條, 第4條, 第5條第1項 · 第3項(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 · 第4項의 罪를 범한 者라는 情을 알면서 搜查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告知하지 아니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本犯과 親族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全文改正 91·5·31]

第11條 (特殊職務遺棄) 犯罪搜查 또는 情報의 職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이 法의 罪를 犯한 者라는 情을 알면서 그 職務를 遺棄한 때에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다만, 本犯과 親族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12條 (誣告, 捏造) ①他人으로 하여금 刑事處分을 받게 할 目의로 이 法의 罪에 대하여 誣告 또는 偽證을 하거나 證據를 捏造 · 湮滅 · 隱匿한 者는 그 각條에 정한 刑에 處한다.

②犯罪搜查 또는 情報의 職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이나 이를 補助하는 者 또는 이를 指揮하는 者가 職權을 濫用하여 第1

項의 行爲를 한 때에도 第1項의 刑과 같다. 다만, 그 法定刑의 最低가 2年未滿일 때에는 이를 2年으로 한다.

第13條 (特殊加重) 이 法, 軍刑法 第13條 · 第15條 또는 刑法 第2編第1章 内亂의 罪 · 第2章 外患의 罪를 犯하여 禁錮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을 終了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執行을 終了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5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가 第3條第1項第3號 및 第2項 내지 第5項, 第4條第1項第1號中 刑法 第94條第2項 · 第97條 및 第99條, 同項 第5號 및 第6號, 第2項 내지 第4項, 第5條, 第6條第1項 및 第4項 내지 第6項, 第7條 내지 第9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대한 法定刑의 最高를 死刑으로 한다.

第14條 (資格停止의 併科) 이 法의 罪에 관하여 有期徒刑을宣告할 때에는 그 刑의 長期이하의 資格停止를 併科할 수 있다. <改正 91·5·31>

第15條 (沒收 · 追徵) ①이 法의 罪를 犯하고 그 報酬를 받은 때에는 이를 沒收한다. 다만, 이를 没收할 수 없을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②檢事는 이 法의 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 訴追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押收物의 폐기 또는 國庫歸屬을 命할 수 있다.

第16條 (刑의 減免)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1. 이 法의 罪를 犯한 후 自首한 때
2. 이 法의 罪를 犯한 者가 이 法의 罪를 犯한 他人을 告發하거나 他人이 이 法의 罪를 犯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削除 <91·5·31>

第17條 (他法適用의 排除) 이 法의 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는

勞動爭議調整法 第9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章 特別刑事訴訟規定

- 第18條 (参考人の 拘引·留置)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으로부터 이 法에 정한 罪의 參考人으로 출석을 要求받은 者가 정당한 理由없이 2回이상 出席要求에 불응한 때에는 管轄法院判事의 拘束令狀을 發付받아 拘引할 수 있다.
 ②拘束令狀에 의하여 參考人을 拘引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近接한 警察署 기타 적당한 場所에 임시로 留置할 수 있다.
- 第19條 (拘束期間의 延長) ①地方法院判事는 第3條 내지 第10條의 罪로서 司法警察官이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 搜查를 繼續함에 상당한 理由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刑事訴訟法 第202條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1次에 한하여 許可할 수 있다.
 ②地方法院判事는 第1項의 罪로서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搜查를 계속함에 상당한 理由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刑事訴訟法 第203條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2次에 한하여 許可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期間의 延長은 각 10日이내로 한다.
- 第20條 (公訴保留) ①檢事는 이 法의 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 刑法 第51條의 事項을 참작하여 公訴提起를 保留할 수 있다.
 ②第1項에 의하여 公訴保留를 받은 者가 公訴의 提起없이 2年을 경과한 때에는 訴追할 수 없다.
 ③公訴保留를 받은 者가 法務部長官이 정한 監視·保導에 관한 規則에 違反한 때에는 公訴保留를 取消할 수 있다.
 ④第3項에 의하여 公訴保留가 取消된 경우에는 刑事訴訟法

第20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동일한 犯罪事實로 再拘束할 수 있다.

第4章 報償과 援護

- 第21條 (賞金) ①이 法의 罪를 犯한 者를 搜查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通報하거나 逮捕한 者에게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賞金을 支給한다.
 ②이 法의 罪를 犯한 者를 認知하여 逮捕한 搜查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종사하는 者에 대하여도 第1項과 같다.
 ③이 法의 罪를 犯한 者를 逮捕할 때 反抗 또는 交戰狀態下에서 부득이한 事由로 殺害하거나 自殺하게 한 경우에는 第1項에 準하여 賞金을 支給할 수 있다.
- 第22條 (報勞金) ①第21條의 경우에 押收物이 있는 때에는 賞金을 支給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押收物 價額의 2分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②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로부터 金品을 取得하여 搜查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제공한 者에게는 그 價額의 2分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反國家團體의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가 提供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報勞金의 請求 및 支給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23條 (報償) 이 法의 罪를 犯한 者를 申告 또는 逮捕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傷瘡를 입은 者와 死亡한 者의 遺族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有功者禮遇등에 관한 法律에 의한 公傷軍警 또는 殉職軍警의 遺族으로 보아 報償할 수 있다.

[全文改正 91·5·31]

第24條 (國家保安有功者 審查委員會) ①이 法에 의한 賞金과 報勞金의 支給 및 第23條에 의한 報償對象者를 審議·決定하기 위하여 法務部長官소속하에 國家保安有功者審查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1·5·31>
 ②委員會는 審議上 필요한 때에는 關係者の 출석을 要求하거나 調查할 수 있으며, 國家機關 기타 公·私團體에 照會하여 필요한 事項의 보고를 要求할 수 있다.
 ③委員會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5條 (軍法 被適用者에 대한 準用規定) 이 法의 罪를 犯한 者가 軍事法院法 第2條 第1項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인 때에는 이 法의 規定中 判事는 軍事法院軍判事로, 檢事는 軍檢察部檢察官으로, 司法警察官은 軍司法警察官으로 본다. <改正 87·12·4, 94·1·5>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反共法은 이를 廢止한다. 다만, 同法 廢止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및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社會安全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第4號를 削除한다.

3. 國家保安法 第3條 내지 第9條

附則 第2項第3號를 第4號로 하고, 同項에 第3號를 다음과 같

이 新設한다.

3. 法律 第3318號 國家保安法 施行前의 行爲로 인하여 法律 第549號 國家保安法 第1條 내지 第8條 또는 法律 第643號 反共法 第3條 내지 第7條의 適用을 받아 禁錮이상의 刑의宣告를 받고 그 執行을 받은 事實이 있는 者 附則 第3項중 “附則 第2項”을 “附則 第2項(第3號를 제외한다)”로 한다.

②反國家行爲者의 處罰에 관한 特別措置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중 “國家保安法(第9條를 제외한다)”을 “國家保安法(第10條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反共法(第8條를 제외한다)”을 削除한다.

附則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法律 第3318號 國家保安法 施行前에 法律 第549號 國家保安法(第9條를 제외한다) 또는 法律 第643號 反共法(第8條를 제외한다)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第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國家保安法(第10條를 제외한다)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로 본다.

③沒收金品等處理에 關한 臨時特例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중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을 “國家保安法”으로 한다.

第2條중 “國家保安法 第12條第2項 및 反共法 第11條”를 “國家保安法 第15條第2項 및 第22條”로 한다.

④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을 引用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法律에 갈음하여 이 法을 引用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中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 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該當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4條 (經過措置) ①舊刑法 第2編第2章 内亂에 관한 罪, 第3章 外患에 관한 罪, 舊國防警備法 第32條, 第33條, 舊海岸警備法 第8條의2, 第9條, 舊非常事態下의犯罪處罰에關한特別措置令,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罪를 犯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는 刑法 第2編第1章 内亂의 罪, 第2章 外患의 罪, 軍刑法 第13條, 第15條의規定 또는 이 法에 의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로 본다. 이 法 施行後에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罪를 犯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도 또한 같다.

②이 法 施行前에 特殊犯罪處罰에關한特別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前에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處分은 이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이 法 施行前에 한 反共法의 規定에 의한 賞金 또는 報勞金의 請求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附則 <87·1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2月 25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1·5·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國家保安法의 罪를 犯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는 이法에 의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로 본다. ~

附則 <94·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7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保安觀察法

第1條 (目的) 이 法은 特定犯罪를 범한 者에 대하여 再犯의 危險性을 예방하고 건전한 社會復歸를 촉진하기 위하여 保安觀察處分을 함으로써 國家의 安全과 社會의 安寧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 (保安觀察該當犯罪) 이 法에서 “保安觀察 該當犯罪”라 함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罪를 말한다.

1. 刑法 第88條 · 第89條(第87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 第90條(第87條에 해당하는罪를 제외한다) · 第92條 내지 第98條 · 第100條(第99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및 第101條(第99條에 해당하는罪를 제외한다)

2. 軍刑法 第5條 내지 第8條 · 第9條第2項 및 第11條 내지 第16條

3. 國家保安法 第4條, 第5條(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第6條, 第9條第1項 · 第3項(第2項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 第4項

第3條 (保安觀察處分對象者) 이 法에서 “保安觀察處分對象者”라 함은 保安觀察該當犯罪 또는 이와 競合된 犯罪로 禁錮이

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期合計가 3年이상인 者로서 刑의 전부 또는 일부의 執行을 받은 사실이 있는 者를 말한다.

第4條 (保安觀察處分) ① 第3條에 해당하는 者중 保安觀察該當犯罪를 다시 범할 危險性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再犯의 방지를 위한 觀察이 필요한 者에 대하여는 保安觀察處分을 한다.

② 保安觀察處分을 받은 者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住居地 管轄警察署長(이하 “管轄警察署長”이라 한다)에게 申告하고, 再犯방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保安觀察을 받아야 한다.

第5條 (保安觀察處分의 期間) ① 保安觀察處分의 期間은 2年으로 한다.

② 法務部長官은 檢事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保安觀察處分審議委員會의 議決을 거쳐그 期間을 更新할 수 있다.

第6條 (保安觀察處分對象者の 申告) ① 保安觀察處分對象者は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刑의 執行을 받고 있는 矯導所, 少年矯導所, 拘置所, 留置場, 軍矯導所 또는 營倉(이하 “矯導所등”이라 한다)에서 出所전에 居住豫定地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을 矯導所등의 長을 경유하여 居住豫定地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고, 出所후 7日이내에 그 居住豫定地 管轄警察署長에게 出所事實을 申告하여야 한다.

第20條第3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法務部長官이 제공하는 居住할 場所(이하 “居所”라 한다)를 居住豫定地로 申告하여야 한다.

② 保安觀察處分對象者は 矯導所등에서 出所한 후 第1項의 申告事項에 變動이 있을때에는 變動이 있는 날부터 7日이내에

그變動된 사항을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20條第3項에 의하여 居所제공을 받은 者가 住居地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管轄警察署長에게 第18條第4項 但書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한다.

③矯導所등의 長은 第3條에 해당하는 者가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保安觀察處分審議委員會와 居住豫定地를 관할하는 檢事 및 警察署長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第7條 (保安觀察處分의 請求) 保安觀察處分請求는 檢事が 행한다.

第8條 (請求의 방법) ①第7條의 規定에 의한 保安觀察處分請求는 檢事が 保安觀察處分請求書(이하 “處分請求書”라 한다)를 法務部長官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②處分請求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保安觀察處分을 請求받은 者(이하 “被請求者”라 한다)의 姓名 기타 被請求者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請求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③檢事が 處分請求書를 제출할 때에는 請求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資料와 意見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檢사는 保安觀察處分請求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處分請求書瞻本을 被請求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중 송달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9條 (調查) ①檢사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保安觀察處分請求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保安觀察處分對象者, 請求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保安觀察處分을 필요로 하는 資料를 調査할 수 있다.

②司法警察官吏와 特別司法警察官吏(이하 “司法警察官吏”라 한다)는 檢事의 指揮를 받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할 수 있다.

第10條 (審查) ①法務部長官은 處分請求書와 資料에 의하여 請求된 事案을 審查한다.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查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法務部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의 命을 받은 公務員은 다음 각號의 權限을 가진다.

1. 被請求者 기타 關係者의 召喚·審問·調查
2. 國家機關 기타 公·私團體에의 照會 및 關係資料의 제출 요구

第11條 (保安觀察處分의 免除) ①法務部長官은 保安觀察處分對象者중 다음 각號의 요건을 갖춘 者에 대하여는 保安觀察處分을 하지 아니하는 決定(이하 “免除決定”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違法精神이 확립되어 있을 것
2. 일정한 住居와 生業이 있을 것
3. 大統領令이 정하는 身元保證이 있을 것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요건을 갖춘 保安觀察處分對象者の申請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月내에 保安觀察處分免除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③檢사는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요건을 갖춘 保安觀察處分對象者の 情狀를 참작하여 危險性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法務部長官에게 免除決定을 請求할 수 있다.

④免除決定을 받은 者가 그 免除決定要件에 해당하지 아니하

게 된 때에는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은 免除決定 을 取消할 수 있다.

⑤免除決定과 免除決定請求, 免除決定取消請求 및 그 決定에 대하여는 保安觀察處分請求 및 審查決定에 관한 規定을 準用 한다.

⑥保安觀察處分의 免除決定을 받은 者는 그때부터 이 法에 의한 保安觀察處分對象者 또는 被 保安觀察者로서의 義務를 免한다.

第12條 (保安觀察處分審議委員會) ①保安觀察處分에 관한 事案 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法務部에 保安觀察處分審議委員會 (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6人の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委員長은 法務部次官이 되고, 委員은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로 하되, 그 過半數는 繼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이어야 한다.

④委員은 法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⑤위촉된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公務員인 委員 은 그 職을 免한 때에는 委員의 資格을 상실한다.

⑥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도 이 法 기타 다른 法律의 規定 에 의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公務員으로 본다.

⑦委員長은 委員會의 會務를 統理하고 委員會를 代表하며, 委員會의 會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⑧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가 지정한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⑨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案을 審議·議決한다.

1. 保安觀察處分 또는 그 棄却의 決定

2. 免除 또는 그 取消決定

3. 保安觀察處分의 取消 또는 期間의 更新決定

⑩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을 포함한 在籍委員 過半數의 출석 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⑪委員會의 운영·庶務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 한다.

第13條 (被請求者の 資料提出등) ①被請求者は 處分請求書를 本 을 송달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法務部長官 또는 委員會에 書面으로 자기에게 이익된 사실을 陳述하고 資料를 제출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被請求者 및 기타 關係者를 출석시켜 審問·調查하거나 公務所 기타 公·私團體에 대하여 照會할 수 있으며, 關係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第14條 (決定) ①保安觀察處分에 관한 決定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法務部長官이 行한다.

②法務部長官은 委員會의 議決과 다른 決定을 할 수 없다. 다만, 保安觀察處分對象者에 대하여 委員會의 議決보다 유리한 決定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5條 (議決書等) ①委員會의 議決은 이유를 불이고 委員長과 出席委員이 記名捺印하는 文書로써 行한다.

②法務部長官의 決定은 이유를 불이고 法務部長官이 記名·捺印하는 文書로써 行한다.

第16條 (決定의 取消등) ①檢事는 法務部長官에게 保安觀察處分 의 取消 또는 期間의 更新을 請求할 수 있다.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받은 때에는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이를 審查·決定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와 그 請求의 審查·決定에 대하여는 保安觀察處分請求 및 審查決定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7條 (保安觀察處分의 執行) ①保安觀察處分의 執行은 檢事が 指揮한다.

②第1項의 指揮는 決定書謄本을 첨부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③檢事는 被保安觀察者가 도주하거나 1月이상 그 所在가 불명한 때에는 保安觀察處分의 執行中止決定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消滅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決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第18條 (申告事項) ①保安觀察處分을 받은 者(이하 “被保安觀察者”라 한다)는 保安觀察處分決定告知를 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다음 각號의 사항을 住居地를 관할하는支署 또는 派出所의 長(이하 “支·派出所長”이라 한다)을 거쳐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20條第3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法務部長官이 提供하는 居所를 住居地로 申告하여야 한다.

1. 原籍, 本籍, 住居(실제로 生活하는 居處), 姓名, 生年月日, 性別, 住民登錄番號
2. 家族 및 同居人 狀況과 交友關係
3. 職業, 月收, 本人 및 家族의 財產狀況
4. 學歷, 經歷
5. 宗教 및 加入한 團體
6. 職場의 所在地 및 連絡處
7. 保安觀察處分對象者 申告를 행한 管轄警察署 및 申告日字

8.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被保安觀察者는 保安觀察處分決定告知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每3月이 되는 달의 末日까지 다음 各號의 사항을 支·派出所長을 거쳐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3月間의 主要活動事項

2. 通信·會合한 다른 保安觀察處分對象者の 人事項과 그 日時, 場所 및 내용

3. 3月間에 행한 旅行에 관한 사항(申告를 마치고 중지한 旅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管轄警察署長이 保安觀察과 관련하여 申告하도록 指示한 사항

③被保安觀察者는 第1項의 申告事項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7日이내에 支·派出所長을 거쳐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被保安觀察者가 第1項의 申告를 한 후

第20條第3項에 의하여 居所제공을 받거나 第20條第5項에 의하여 居所가 變更된 때에는 제공 또는 變更된 居所로 移轉한 후 7日이내에 支·派出所長을 거쳐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被保安觀察者가 住居地를 移轉하거나 國外旅行 또는 10日 이상 住居를 離脫하여 旅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居住豫定地, 旅行豫定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支·派出所長을 거쳐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20條第3項에 의하여 居所제공을 받은 者가 住居地를 移轉하고자 할 때에는 第20條第5項에 의하여 居所變更을 申請하여 變更決定된 居所를 居住豫定地로 申告하여야 한다.

⑤管轄警察署長은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때에는 申告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第19條 (指導) ①檢事 및 司法警察官吏는 被保安觀察者의 再犯을 방지하고 건전한 社會復歸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指導를 할 수 있다.

1. 被保安觀察者와 긴밀한 接觸을 가지고 항상 그 行動 및 環境등을 觀察하는 것
 2. 被保安觀察者에 대하여 申告事項을 이행함에 적절한 指示를 하는 것
 3. 기타 被保安觀察者が 社會의 선량한 一員이 되는데 필요한 措置를 취하는 것
- ②檢事 및 司法警察官은 被保安觀察者の 再犯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1. 保安觀察該當犯罪를 범한 者와의 會合·通信을 금지하는 것
 2. 集團的인 暴行, 霹迫, 損壞, 放火등으로 公共의 安寧秩序에 직접적인 威脅을 가할 것이 명백한 集會 또는 示威場所에의 出入을 금지하는 것
 3. 被保安觀察者の 보호 또는 調査를 위하여 特定場所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

第20條 (보호) ①檢事 및 司法警察官吏는 被保安觀察者が 自助의 노력을 함에 있어, 그의 개선과 自衛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보호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住居 또는 就業을 알선하는 것
2. 職業訓練의 機會를 제공하는 것
3. 環境을 개선하는 것
4. 기타 本人의 건전한 社會復歸를 위하여 필요한 援助를 하

는 것

③法務部長官은 保安觀察處分對象者 또는 被保安觀察者中 國內에 家族이 없거나 家族이 있어도 引受를 거절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居所를 제공할 수 있다.

④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한 社會福祉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의 長은 法務部長官으로부터 保安觀察處分對象者 또는 被保安觀察者에 대한 居所제공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法務部長官은 第3項에 의하여 居所제공을 받은 者에게 國내에 인수를 희망하는 家族이 생기거나 기타 居所變更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本人의 申請 또는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이미 제공한 居所를 變更할 수 있다. 이 경우 法務部長官은 3月이내에 居所의 變更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第21條 (應急救護) 檢事 및 司法警察官吏는 被保安觀察者에게 負傷·疾病 기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救護를 할 수 있다.

第22條 (警告) 檢事 및 司法警察官吏는 被保安觀察者가 義務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危險性이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刑事處罰등 불이익한 處分을 받을 수 있음을 警告할 수 있다.

第23條 (行政訴訟) 이 法에 의한 法務部長官의 決定을 받은 者가 그 決定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行政訴訟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決定이 執行된 날부터 60日이내에 서울高等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免除決定申請에 대한 棄却決定을 받은 者가 그 決定에 異議가 있을 때

에는 그 決定이 있는 날부터 60日이내에 서울高等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第24條 (行政訴訟法의 準用) 第23條의 訴訟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行政訴訟法을 準用한다. 다만, 行政訴訟法 第18條 및 第23條와 同法 第8條第2項에 의하여 準用되는 民事訴訟法中 假處分에 관한 規定은 準用하지 아니한다.

第25條 (期間의 計算) ①保安觀察處分의 期間은 保安觀察處分決定을 執行하는 날부터 計算한다. 이 경우 初日은 算入한다.
 ②第18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期間은 保安觀察處分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③保安觀察處分의 執行中止決定이 있거나 憲役·禁錮·拘留·勞役場留置 또는 社會保護法에 의한 監護의 執行중에 있는 때에는 保安觀察處分의 期間은 그 進行이 정지된다.

第26條 (軍法被適用者에 대한 特則等) ①軍事法院法 第2條第1項各號의 1에 계기된者에 대한 保安觀察處分에 관하여는 國防部長官은 法務部長官의, 軍事法院檢察官은 檢事의, 軍司法警察官吏는 司法警察官吏의 이 法에 의한 職務를 행한다.
 ②軍事法院法 第2條第1項 各號의 1에 계기된 者에 대한 保安觀察處分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國防部에 軍保安觀察處分審議委員會를 둔다.
 ③軍保安觀察處分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第1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④國防部長官 또는 軍事法院檢察官은 保安觀察處分對象者가 軍事法院法 第2條第1項各號의 1에 계기된 者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事案을 法務部長官 또는 檢事에게 移送한다. 이 경우 移送전에 한 審查 또는 調査는 移送후에도 그 效力에

영향이 없다.

⑤法務部長官 또는 檢事는 保安觀察處分對象者가 軍事法院法 第2條第1項 各號의 1에 계기된 者임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事案을 國防部長官 또는 軍事法院檢察官에게 移送한다. 이 경우 移送전에 한 審查 또는 調査는 移送후에도 그 效力에 영향이 없다.

第27條 (罰則) ①保安觀察處分對象者 또는 被保安觀察者가 保安觀察處分 또는 保安觀察을 免脫할 目的으로 隱身 또는 逃走한 때에는 3年이하의 憲役에 處한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第6條第1項·第2項 및 第18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또는 그 申告를 함에 있어서 居住豫定地나 住居地를 명시하지 아니한 者는 2年이하의 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정당한 이유없이 第19條第2項의 措置에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憲役 또는 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④第20條第4項에 위반한 者는 6月이하의 憲役 또는 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⑤保安觀察處分에 관한 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職務遂行을 거부 또는 그 職務를 유기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2年이하의 憲役 또는 5年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⑥保安觀察處分對象者 또는 被保安觀察者를 은닉하거나 逃走하게 한 者는 2年이하의 憲役에 處한다. 다만, 親族·戶主 또는 同居의 家族이 本人을 위하여 本文의 罪를 범한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⑦保安觀察處分의 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또는 第11條의 身元保證을 한 者가 정당한 사유 없이 保安觀察處分對象者에 관하여 이 法에 의하여 知得한 사실을 公表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年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附則 <91·11·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保安觀察處分對象者에 대한 經過措置)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이 法適用에 있어서 保安觀察處分對象者로 본다. <改正 91·11·22>

1. 이 法 施行당시 法 第3條에 해당하는 者
2. 이 法 施行당시 舊刑法 第81條 내지 第85條 · 第87條(第86條의 未遂罪를 제외한다) 및 第88條(第86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 구비상사태하의犯罪處罰에 관한特別措置令 第3條 내지 第5條, 法律 第10號 舊國家保安法 第1條 내지 第4條, 法律

第85號 舊國家保安法 第1條 내지 第5條, 法律 第500號 舊國家保安法 第6條 내지 第20條(第17條第4項을 제외한다) · 第21條第1項 · 第25條 및 第28條(第17條第4項 · 第21條第2項 내지 第4項의豫備 · 陰謀 · 未遂犯을 제외한다), 法律 第549號 舊國家保安法 第2條 내지 第8條(第1條의 未遂犯,豫備 · 陰謀 및 第5條第2項의豫備 · 陰謀를 제외한다), 法律 第643號 反共法 第6條(第4項중 國外의 共產系列의 指令을 받고 또는 받기 위하여 潛入 · 脫出한 행위 및 그 未遂犯,豫備 · 陰謀를 제외한다) 및 第7條, 舊國防警備法 第32條 및 第33條, 舊海岸警備法 第8條의2 및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罪 또는 이와 競合된

犯罪로 禁錮이상의 刑의宣告를 받고 그 刑期合計가 3年이상인 者로서 刑의 전부 또는 일부의 執行을 받은 사실이 있는 者 ~

3. 이 法 施行당시 第2號에 계기된 罪를 범한 者중 이 法 施行후에 第2號에 계기된罪 또는 이와 競合된 犯罪로 禁錮이상의 刑의宣告를 받고 그 刑期合計가 3年이상인 者로서 刑의 전부 또는 일부의 執行을 받은 사실이 있는 者

第3條 (保安處分을 받은 者등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社會安全法의 規定에 의하여 保安處分, 그 期間更新 또는 각 그 棄却의 決定을 받은 者중 이法에 의한 保安觀察處分對象者로 되는 者는 이 法에 의하여 保安觀察處分, 그 期間更新 또는 각 그 棄却의 決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4條 (保安監護중에 있는 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社會安全法의 規定에 의하여 保安監護중에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20條第3項에 의한 居所제공 기타 出所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法務部長官은 1月의 범위안에서 그 出所를 猶豫할 수 있다.

第5條 (保安處分免除決定을 받은 者등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社會安全法의 規定에 의하여 保安處分의 免除決定, 그 請求 또는 申請의 棄却決定 또는 免除決定의 取消決定을 받은 者중 이 法에 의한 保安觀察處分對象者로 되는 者는 이 法에 의하여 保安觀察處分의 免除決定, 그 請求 또는 申請의 棄却決定 또는 免除決定의 取消決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6條 (申告義務에 관한 經過措置) ①附則 第2條에 의하여 保安觀察處分對象者로 된 者는 第6條第1項 ·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하되, 이 法 施行당시 그 刑의 執行을 받은 燣導所등에서 出所한 者는 第6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할 사항을 이 法 施行日부터 30日이내에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社會安全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는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②附則 第3條에 의하여 被保安觀察者로 된 者는 第18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의한 申告를 하여야 하되, 이 法 施行日부터 30日이내에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할 사항을 申告하고, 그 申告한 날이 속한 달부터 每 3月이 되는달의 末日까지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할 사항을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7條 (行政訴訟에 대한 經過措置) 第23條 및 第24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法院에 繫屬중인 事件에 대하여 이를 適用한다. 다만, 이 法 施行전에 행한 訴訟行爲의 效力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8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社會安全法 또는 社會安全法에 의한 保安處分을 引用한 경우에는 保安觀察法 또는 保安觀察法에 의한 保安觀察處分을 각각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9條 (罰則) 附則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는 第27條第2項의 예에 의하여 處罰한다.

- 1 전문개정 89. 6.16 法律第4132號
- 2 일부개정 91.11.22 法律第4396號

보안관찰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법 제2조 각호의 1 또는 법 부칙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2.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피보안관찰자”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주거지 관찰검사”라 함은 주거지를 관찰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거주예정지 관찰검사”라 함은 거주예정지를 관찰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찰검사”라 함은 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찰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말한다.

제3조 (형기계산) 법 제3조에 규정된 형기합계를 계산함에 있어 소년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단기를 형기로 한다.

제4조 (보안관찰) ①피보안관찰자의 주거지를 관찰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은 피보안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선도하여 보안 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②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부를 작성·비치하고 매월 1회이상 피보안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여 그 결과를 보안관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동태보고등) ①관할경찰서장은 매 3월마다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을 포함한 피보안관찰자의 주요동태를 주거지 관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보안관찰처분과 관련한 각종 지시에 위반한 때
3. 일정한 주거가 없게 된 때
4. 10일이상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때
5. 사망한 때
6.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
7.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한 때
8. 법 제25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기간의 진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

9.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6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①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소전에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5부를 작성하여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적·본적·주거(실제로 생활하는 거처, 이하 같다)·성명·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번호
2. 가족 및 교우관계
3. 입소전의 직업·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병역관계
7. 출소예정일
8.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
9.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의 요지·판결법원·판결연월일·죄명·적용법조·형명·형기
10. 보안관찰해당범죄외의 전과관계
11. 법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소제공 결정일자와 제공된 사회복지시설등의 명칭 및 그 소재지
- ②교도소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고서 1부씩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거주예정지 관찰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 ③교도소등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할 때에는 보안관찰해당범죄에 대한 판결문사본·행형성적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의무의 고지) 교도소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 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출소통보등) ①교도소등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한 자가 출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원적 · 본적 · 주거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민등록번호
2. 출소일 및 출소사유
3.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시
4. 행장의 양부
5. 건강상태
6. 사상전향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거주예정지 관할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출소사실 신고등) ①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사실 신고를 하는 때에는 출소일 · 출소교도소 · 출소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2인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인이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제6조제1항의 신고사항중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이를 그 거주예정지 또는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신고한 거주예정지를 변경하거나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 · 출소사실신고서 기타 관계서류를 변경된 거주예정지 또는 신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변경된 거주예정지 또는 신주거지 관할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발생통고등) ①교도소등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와 거주예정지 관할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적 · 본적 · 주거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민등록번호
2. 출소예정일
3.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4.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의 요지 · 판결법원 · 판결연월일 · 죄명 · 적용법조 · 형명 · 형기
5. 보안관찰해당범죄외의 전과관계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교도소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와 거주예정지 관할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사망한 때
3. 도주한 때
4. 다른 교도소등에 이송된 때
5. 가석방 구신결정 또는 형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때
6.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사망한 때
3. 소재가 불명하거나 도주한 때
4.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을 때
5. 국외여행을 할 때
6.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 (보안관찰처분청구서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서에는 피청구자의 성명 기타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청구연월일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를 제공한 때에는 거소제공 결정연월일 및 제공된 사회복지시설등의 명칭과 그 소재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3항의 의견서에는 청구취지와 적용법조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그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2. 감정·통역이나 번역의 위촉
3.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대한 조회와 자료제출 요구

제14조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기타 주거가 일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3. 재직증명서 기타 생업이 일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서

②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20일이내에 전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이어야 한다.

1. 주거지의 읍·면·동·리·통·반의 장
2. 신청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장
3.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때에는 그 제공된 사회복지시설등의 장
4.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⑤검사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청구서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의견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회에의 회부·의결)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2조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위원회에 그 사안을 회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회부받은 때에는 이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직원) ①위원회에 간사 2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법무부소속 직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7조 (회의록) ①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전말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결정서) 보안관찰처분결정서에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검사의 직위·성명과 피청구자의 성명·연령·직업·주거·결정주문 및 이유와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결정의 고지)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의 고지는 검사가 피청구자 또는 신청인에게 결정서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고지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지휘·감독) 검사는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경찰서장·사법경찰관리·교도소등의장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3조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신청등) ①관할경찰서장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주민등록표등본, 주거지 리·통·반의장의 확인서 기타 피보안관찰자가 도주 또는 소재불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

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때에는 피보안관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보안관찰처분 결정일 및 그 기간갱신일, 집행중지사유, 집행중지결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안관찰처분 집행 중지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집행지휘를 하고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피보안관찰자의 성명 기타 피보안관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집행중지결정일, 집행중지결정취소사유, 취소결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피보안관찰자는 검사의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그 집행중지결정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⑥검사는 제5항의 취소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⑦검사는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취소지휘 또는 보안관찰처분의 잔기간집행지휘를 하고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사항등) ①법 제1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가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외여행관계

2. 보안관찰처분 결정일자 또는 그 기간갱신일자

3.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후에 범한 전과관계

4. 법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소제공결정일자와 제공된 사회복지시설 등의 명칭 및 그 소재지

②피보안관찰자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주거지 이전의 경우

가. 이전예정지

나. 이전예정일

다. 이전사유

라. 기타 필요한 사항

2. 국외여행의 경우

가. 여행대상국

나. 여행목적

다. 여행기간

라. 동행자

마. 여권의 종류 및 여권번호

바. 기타 필요한 사항

3. 국내여행의 경우

가. 여행목적지

나. 여행목적

다. 여행기간

라. 동행자

마. 기타 필요한 사항

③관찰경찰서장은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전예정지 또는 여행목적지 관찰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찰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주거지 관찰경찰서장에게 보안관찰부 기타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신거주지 관찰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그 주거지 이전의 사실을 신주거지 관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지도의 방법) ①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피보안관찰자와의 면접과 통신, 가족 및 그 관계인과의 협의, 거소제공된 사회복지시설등의 장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관찰·지도하여야 하며, 피보안관찰자 및 그 관계인의 신뢰와 협력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때에는 피보안관찰자에게 조치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조치를 할 때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주거지 관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조치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 사항으로서 피보안관찰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거소제공의 방법)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제공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②교도소등의 장은 수용중인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중 저소제공이 필요한 자(이하 “거소제공대상자”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소예정일 2월전까지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찰검사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관찰경찰서장은 그 관찰구역내에 거소제공대상자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주거지관찰검사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교도소등의 장 및 관찰경찰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거소제공대상자의 성명 기타 거소제공대상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거소제공의 필요사유, 행형성적 또는 최근의 동태를 기재한 신청서와 거소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을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서와 거소제공에 필요한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법무부장관은 거소제공대상자에 대하여 거소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기타 본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적절한 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⑦검사는 법무부장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제공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도소등의 장 또는 관찰경찰서장, 사회복지시설등의 장에게 결정내용 및 결정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거소제공대상자에 대한 거소제공결정의 고지는 검사가 거소제공결정서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⑨교도소등의 장은 거소제공대상자가 출소하는 때에 지체없

부 록

이, 관찰경찰서장은 거소제공결정의 통보를 받은 때에 지체 없이 거소제공결정을 받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를 지정된 사회복지시설등의 장에게 인계하고 즉시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거소변경의 절차) ①거소제공을 받은 자는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변경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찰경찰서장에게 거소변경 신청서와 거소변경이 필요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찰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20일이내에 의견서와 거소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거지 관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의견서와 거소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변경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거소변경 청구서와 의견서 및 거소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6조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법무부장관이 거소변경 결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임시거소의 제공) ①검사는 긴급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거소제공결정 또는 거소변경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회복지시설등의 장과 협의하여 거소 제공대상자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거소의 제공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등) ①법 제20조제4항의 사회복지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기거와 침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시설을 거소로 지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4·12·23>

③사회복지시설등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찰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사망한 때
3. 소재가 불명하거나 도주한 때
4. 인수할 가족이 생긴 때
5.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30조 (응급구호의 범위)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질병·부상 기타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피보안관찰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될 때
2. 기타 응급구호를 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호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경고의 방법)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의 경고는 경고일시, 경고이유, 경고내용 및 그에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경고할 수 있다.

제32조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의 준용)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군보안 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안처분을 받은 자등에 대한 고지) 검사는 이 영 시행후 1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종전의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한 보안처분을 받은 자중 법률 제4132호 사회안전법개정법률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형기합산) 법률 제4132호 사회안전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형기합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보안감호증에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안감호소에 보안감호 증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4132호 사회안전법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출소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사회안전법시행령증 보안감호소에 보안감호증에 있는 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국가보안법 대처요령

◎ 임의동행은 모두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 임의동행 요구자의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동행의 목적과 이유 및 동행 장소를 물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요구에 경찰관이 불응하면 불법연행이라고 주장하고 단호히 동행을 거절하자.
- 동행에 응하여 경찰관서에 갔더라도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퇴거의 자유가 있고, 외부 친지 및 변호인과의 연락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상황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고 사용하자.

- 임의동행 후 심문이 실시되어도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은 헌법상, 형사소송법상,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묵비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묵비권 행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강제적인 검문과 소지품 검사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범죄수사를 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 불심검문 경찰관의 신분과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만일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심검문에 불응할 것임을 명백히하자.

- 소지품을 보여달라고 요구받을 때 이를 거절하고 싶으면 당당히 거절하고, 만일 강제적인 소지품 검사가 있으면 이에 대항하여도 좋다.

-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 주민등록증이 없어 가지고 있는 대용신분증(운전면허증, 학생증 등)으로 신원을 증명하였음에도 신원을 더 확인하겠다며 인근 경찰관서로 강제로 연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연행이므로 강력대항해도 좋다.

◎ 영장제시가 없는 강제연행은 거부하여야 한다.

- 임의동행이 아니면서 영장의 제시가 없는 연행은 긴급구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현행범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불법연행이기에 영장제시나 긴급구속장에 대한 제시를 명백히 하자.

-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구속의 절차, 즉 미란다 원칙으로 일컬어지는 것으로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등을 하지 않는 연행도 불법연행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재판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절대적이 다.

- 수사개시 후 수일 내에 중요한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가 종료 된다는 점에서 수사를 받는 자는 자신이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대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아직도 남아있는 수사과정에서의 강압적인 수사 (고문)에 대하여 변호인의 접견을 통하여 감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의자가 고문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경찰, 검찰의 심문이나 진술서, 자술서를 거부하는 진술거부권(묵비권)은 정당한 권리이다.

- 얼핏 보아 특별한 사항이 없는 사건도 가볍게 보아 방심하지 말라.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면 더욱 방심하지 말라.

- 묵비를 하면 수사관이 무엇인가 있으니 숨기려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라. 어떻게 생각하는 신경쓸 필요가 없다. 당신의 진술만이 당신이나 당신의 동료를 기소시켜 유죄 판결을 받게 할 것이다.

- 묻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도 하지 말라. 부인하면 그 증거를 대라고 추궁당하고, 꼬리를 물고 추궁당할 것이다. 또 재판에서의 반격자료를 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 “자신은 관계가 없으므로”라고 쉽게 “있는 대로” 말하지 말라. 어떤 이유가 있어도 동료의 이름을 대지 말라. 그 동료도 체포된다. 이는 동료를 파는 것이다.

- 너의 동료들이 당신이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는 수사관들의 말을 절대로 믿지 말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도 말하지 말라.

- 거짓 진술을 하지 말라. 수사관이 속을 만큼 엉성하지 않다. 추궁만 당할 것이다.

- 육체적 소모를 막아라. 밥을 잘 씹어 먹어라. 밖의 일은 마음에 두지 말라. 당신이 처한 일만 열심히 하라.

- 처음에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도중에 언제라도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묵비를 하라. 도중에 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단호히 바꾸라.

◎ 선고만 기다리는 재판과정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이 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허위의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여야 한다.
- 검사의 신문에 어떻게 답변할 것이며 변호인의 신문은 어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변호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 최후진술은 어떠한 내용을 담는 것이 좋은가와 1심 재판의 결과를 예측한 상황에서 재심을 청구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루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남 북 화 해

-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와해·전복하려는 일체행위를 하지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권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루어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발효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합의한다.

제 2 장 남 북 불 가 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지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험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정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3 장 남 북 교 류 · 협 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부 록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 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무분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4 장 수 정 및 발 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제정 1990. 8. 1 법률 제4239호

* 개정 1990. 12. 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 구성 본문 총30조와 부칙2조로 구성되어 있음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 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원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1)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통일원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3) 위원은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원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승인등에 관한 중요사항

의 협의·조정

3. 교역대상품목의 범위 결정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조추진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의 의사) 1)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남·북한 왕래) 1)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2)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들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와 신고절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해외동포 등의 출입보장)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권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11조(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출입장소에서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교역당사자) 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하되, 통일원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교역대상물품의 공고) 통일원장관은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제한승인품목 또는 금지품목의 구분
2. 제한승인품목에 관한 제한내용 및 승인절차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등) 1)통일원장관은 교역에 관한 협정의 준수나 물품의 반출·반입의 질서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2)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사업자) 1)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승인취소사유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1)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통일원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의 승인요건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등) 1)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2)통일원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의 시행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결제업무의 취급기관) 1)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

제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1)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 차량 또는 자동차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송장비등의 출입관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5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통신역무의 제공) 1)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2)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자·종류·요금·취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검역등) 1)북한으로부터 내항하는 선박·항공기·하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에는 검역법제6조 내지 제28조 및 제33조 내지 제35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의한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자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자와 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는 국립검역소장 또는 보건소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협조요청) 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1)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방위세법제4조제1호의 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3)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하다.

1. 외국환관리법
2. 외자도입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수출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감면규제법

9.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7조(별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9조제3항,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을 운행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별금 형을 요한다.
- 제29조(형의 감경) 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30조(북한주민의제) 이 법(제9조제1항 및 제11조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부 칙

-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 磯
제3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부 칙<90.12.2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1994년 남한 인권 보고서

미 국무부 저
민중정치연합 국제국 역
장 ** 초역
Unofficial translation

한국은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직선 및 비례 대표로 구성된 단원제 국회로 통치된다. 집권 민자당은 정치제도 및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아직 과거의 권위적인 잔재를 일소하지 못한 상태이다.

국내 치안 유지는 국가안전기획국, 경찰청, 국군기무사가 책임을 지고 있다. 국회는 6월, 치안 기구들을 독자적으로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위원회를 설치했다. 1993년에 통과된 이 법에 따르면, 국가 안전 기획국은 국내 정치 문제에 간섭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테러행위, 간첩행위와 국제범죄 조직에 관한 사건에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1993년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인권 침해를 제시한 보고서가 속출하고 있다.

남한은 천연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강력한 산업국가로 성장했다. 1993년에는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하는 현상을 보였지만, 1994년에는 GNP의 8%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높은 이농률, 노동력 부족, 지역 발전의 불균형, 농업 분야의 비효율성 그리고 지원 시설의 부적절성 등 많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사법부 독립을 강화하고, 새로 재판관, 검찰 그리고 경찰을 임명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인식을 넓혀 나가기 위해 몇 가지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로 인한 긴장 고조와 과격 학생 운동의 고양, 끊임없는 노동 운동 등으로 그 개혁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또한 이미 계획된 노동법 개정도 보류 상태에 놓여 있다. 남한의 노동상태와 소송절차는 아직도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변호사 조력권을 박탈하고, 수사 과정에서 폭언과 잠안재우기를 통해 피의자를 굴복시키는 근거를 담은 내용이 계속 보고 되고 있다. 당국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있다.

여성들의 법적, 사회적 차별과 관련된 신체적 학대 역시 계속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에 관해서 효력있는 법적 근거가 여전히 없는 상태다.

정부는 석방된 정치범을 계속 감시하고 있으며, 그들은 사회감시법(확인요)을 근거로 경찰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바, 정부는 지난 정부에 의해 조작되어 오랜 기간 동안 형을 살았던 무고한 정치범의 사면과 보상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이들 정치범 중에는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하였으며, 그 공정성도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재판을 받아야만 했다고 한다. 비록 직선 정부의 언론 매체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는 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친북 공산주의 지향적인 문헌의 발행, 판매, 배포를 하게된 동기를 결정하는데 판사들에게 광범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구속될 가능성이 때문에 언론의 자유는 방해 받았다.

인권의 존엄

1. 자유를 포함하는 인간의 고결성에 대한 존엄

a. 재판없는 정치적 살인

경찰과 군에 의해서 행해진 재판없이 이루어진 정치적 살인이 보고된 바는 없다. 8월 과격 학생 집회 때 한 행인이 정부의 프락치로 의심받아 학생 단체에게 심문과 폭행을 당했다. 직후 그 행인은 사망했으며 학생 한 명이 이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b. 실종

실종 보고는 없었다.

c.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

정부는 수사 당국에게 피의자 인권을 보호할 것을 지시했다. 또 당국에 의하면 인권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인사가 줄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피의자에게 강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정부 지시에 따르면, 사건의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잠안재우기를 억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찰은 밤샘 심문이라는 관행을 계속하고 있으며, 체포된 지 몇 일 동안은 변호사의 접견권 까지 거부 당했다. 어떤 경우에는 신체적 고문 까지도 당한 예가 있다. 정부는 경찰이 부산의 한 특별 사건에서 심문 도중 살인 피의자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가했다고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1993년 9월 1일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된 김삼석과 김은주 남매의 석방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 남매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중에 신체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들 자매는 경찰이 잠안재우기, 협박 그리고 구타를 통해서 자백을 받아 낸 것으로 기소하고 있다. 김삼석은 또한 그의 여동생이 강간 혐박을 받았으며 자신도 성고문을 받았다면 고발했다. (1.e 참조)

이번 고문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중이지만, 그들의 성고문 주

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했다.

또한 심문 도중 폭언과 협박에 관한 보고들이 있다. 특히 그해 여름 대대적인 학생 체포과정에서 빚어진 폭력에 대한 규탄문서들이 급증했다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왔다.

정부는 이전에 감금되었던 사람들이 과거 자기들이 당한 고문에 대해서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계속 조사 중에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인권 침해에 따르는 불만에 대한 보상으로서 가장 확실한 방법인 신체의 자유를 제공하지 못하고 피의자를 학대 또는 고문으로 공직자를 기소한 적은 거의 없다.

감옥의 영양 공급 상태는 견딜만 한 것이지만, 겨울 및 여름의 난냉방 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감옥 생활은 수형자의 건강을 악화시킨다고 몇몇 수형자들이 밝히고 있다. 수형자 경비에는 지나지게 무력을 행사해 왔으며 수갑을 채운 상태로 투옥 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에는 독서가 허용이 돼 수형자들에게는 굉장한 개선이 있었다. 비록 교도관의 동의하에 인권단체 대표자들이 죄수들을 접견할 수 있긴 하나 감옥 시절 전부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d. 자의적 체포, 구금 및 추방

남한의 법률 중에서 구금에 관한 규정은 모호하여, 경찰이 법률 해석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중 간첩과 관련된 규정은 확대해석하고 있으며 북한을 지지한다고 보이는 사람도 남한에 위험을 줌으로 구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당국은 북한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거나 북한 및 그 지도자 김일성 또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찬양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사람까지도 구속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사람까지도 구속했다.

회(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는 국가 보안법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구비된 권리를 실현하는데 커다란 장애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만도 1993년의 2배인 200여명 이상을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하였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요하거나 이롭게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법적 기준은 모호하다. 결과적으로 단순히 좌익관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남한인들이 구속되었다. 2월 경찰은 노래패인 '희망새'가 주체 사상을 찬양하는 가사를 담은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국가 보안법의 조항으로 그 회원들을 구속했다. 5월 경찰은 광주에서 시위 도중 김일성 추도 제단을 설치했던 학생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한 몇 년 전에 제작하여 대학 교재로 사용해온 경상대 몇몇 교수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는데, 그 책에는 '맑시즘적 용어와 김일성 사상에 관한 용어'를 몇몇 개 사용하고 있었다.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는 정부의 근거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남한 정부와 사회를 전복하려는 점과 특수 상황 때문에 몇가지 형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전체주의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다 큰 위험에 빠트리는 것을 봉쇄하는데 요구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 결과 정부는 법정에서 어떤 특정 표현이나 행동이 실제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법은 체포, 구금, 압수 및 수색을 할 경우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을 요구하고 있다. 단, 형사상의 현행범인 경우, 조속히 체포하

지 않으면 증거가 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예외다. 그런 긴급한 경우에도, 법원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발부해야하며, 동일한 지역에 법원이 없을 경우에는 72시간 내에 그려해야 한다. 경찰은 6시간 까지 심문을 위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지만, 피의자 가족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만 언제나 이런 법적 단서들이 지켜지는 것만은 아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마자, 치안 당국은 통상 기소되지 않는다 면 30일 이후에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따라서 구금자는 전체 수형자 중에서 비교적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국가보안법 제19조에는 판사에게 구금 기간을 20일 연장하는 권한을 주어 법적인 심문 기간은 최고 50일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는 당국이 피의자를 30일이라는 법적 제한일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경우는 반 국가 단체 구성나 간첩 행위와 같은 심각한 죄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단순 찬양이나 국가보안법 상의 보고서 작성 불이행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헌법은 분명히 변호인을 둘 권리(辩护权)를 부여하고 있지만, 검사는 심문과정에서 의뢰인의 변호인을 동석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문과정에서 의뢰인의 변호인을 동석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정부는 피의자가 심문과정에서 당직변호사(duty lawyers, 민간 변호사 단체가 만든 새 제도)에게 의뢰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심문과정에는 변호사의 면담이 제한되고 있어 많은 불만이 뒷따르고 있다. 보석제도도 있지만, 인권 변호사들이 말하는 것에 따르면, 그 보석은 일반적으로 중대한 위반과 관련된 경우 와, 심지어는 위반이 경미하더라도, 간주되는 범죄의 피해자가 보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1994년에는 적절한 절차없이 추방된 정치적인 박해 사례는 없

었다.

e.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의 거부

헌법에는 피고에게 많은 형사상의 권리를 주고 있다. 여기에는 무죄추정, 불리진술 거부권(묵비권, pretection against self-incrimination), 형벌 불소급과 일사부재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청원권이 포함된다. 인신이 구금되어 있을 때, 최초 재판은 구속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권리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 재판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지만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참석자가 혼란을 일으킬 것이 예상되면 참석자를 제한할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소장(재판장)과 그 판사의 대부분을 임명한다. 비록 종신 판사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간 사법부 독립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1994년에도 계속되었다. 판사는 정치적인 이유때문에 해임되거나 전보될 수 없다. 사법부 관리들은 일반적으로 사법부가 독자적이고 자기 권위로 1994년에는 요직을 임명하였다고 간주된다.

6월 대법원장 윤관은 인권운동을 했던 판사를 포함해서 6명의 대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사법부 독립을 명백히 하는 예로는 판사들은 지난 9월 막스주의적 교재를 만든 경상대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려던 검찰 측에게 교수들의 친공산활동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영장을 발수할 수 없다는 밝혔다. 비슷한 경우로 김삼석과 김은주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국가 기밀로 간주되는 증거물을 한정함으로써 해외에서 북한의 공작원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 두 김씨에게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는 항소 내용을 기각함으로써 형이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었다.

판사는 일반적으로 검찰과 변호인 모두의 증인들을 철저히 조사 한다.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같은 법정에서 행한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왕왕 있다. 사형선고를 받는 사건은 자동 항소된다. 1988년부터 설치 운영된 헌법재판소는 계속 그 역할이 증대되어 헌법 해석도 맡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으로 아권의 과거 고문 주장을 심리하고 있다. 인권 단체는 북역자로 많은 사람들이 과거 7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북한을 위한 조중의 많은 활동을 혐의로 일정 기간 동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믿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감금되어 있는 60일 동안 외부와의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흉악한 고문도 참아야 했고, 자백을 강요당했으며 공정한 재판을 규정한 국제 기준에도 저촉되는 재판을 통해서 형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인권 단체는 이들 정치범 중에는 그들이 실제로 현재까지 공산주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포기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초기 가석방이 거부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석방된 정치범들은 계속해서 경찰의 감시를 받아야 했고, 경찰에게 그들의 행적을 정규적으로 보고해야 했다.

유명한 사건으로 투옥자 65명의 가족들은 그런 이단자(these dissidents)들은 과거 정권에 의해 투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현정부를 기소했다. 인권 단체들은 이 소송과 유사한 소송이 단지 형식적인 수사에 그치고 있을 뿐이며 과거의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던 이들이 여전히 투옥되어 고초를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범 즉 비폭력적으로 그들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려다 투옥된 사람들의 수는 추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특정인이 단순히 결사의 자유를 실천했다가 구속되었는지 아니면 폭력행위나 간첩 활동을 실행 또는 의도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사람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1994년에는 정부의 무역 정책과 그에 상응한 정부의 반정부주의자들을 탄압하게 된 것에 대해 과격한 시위의 물결로

인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체포되어 실제로 그 수가 증가하였다.

몇몇 인권 감시 단체들은 한국의 정치범이 1994년에 500명 이상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추정한 정치범의 수는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면 폭력으로 인해서든 다른 형사상의 문제로든 투옥 원인을 구별하지 않고 전체 수형인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 기준으로는 정치범과 그 구금자 수는 2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 같다.

f. 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 침해

일반적으로 정부는 가정과 가족들을 존중한다. 과거 정권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해 도청을 포함한 다양한 사찰 활동을 했다. 도청금지법과 국가보안법의 개정법률은 시민에 대한 정부의 사찰을 금지하였고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도청금지법은 전화, 우편 그리고 다른 형태의 통신에 대한 사찰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로 보편적 조건을 규정하였다. 즉 감청 기관원이 도청을 하기 이전 또는 긴급한 상황일 때는 도청 직후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구속해야 한다. 몇몇 인권 단체는 많은 불법 도청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이 불법 도청의 주범인지를 조사하는 독립 단체가 없기 때문에 도청금지법은 제구실을 못한다고 주장한다.

남한에서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북한 출판물을 읽거나 자기 집에서 북한 라디오를 청취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판단에 속한다. 학생 단체의 확고한 주장은, 정부 정보원이 대학 캠퍼스 내에 고정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운동이나 노동운동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공무원직, 방송보도직 및 교육직의 취업과 승진을 일정한 정도에서 거부당한다.

인권단체 주소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 고영구 변호사)
주소 :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95-2 센츄리 2차
오피스텔 704호
전화 : 02-522-7284, 02-521-0575 / Fax : 02-522-7285
PC ID : M321(천리안), minbyun7(하이텔)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대표 : 윤기원 변호사)
주소 : 136-03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1가 44번지 삼우빌
딩 301호
전화 : 02-747-43945 / Fax : 02-747-4363
PC ID : Naduk(천리안)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대표 : 박홍규 교수)
주소 : 140-150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 02-740-4590 (이상수 총무) / Fax : 02-740-4596 (곽
노현 교수)

인권단체 주소록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 : 박용길, 안옥희, 권오현, 윤혜경)
주소 : 110-5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전화 : 02-763-2606, 02-765-5282 / Fax : 02-745-5604

불교 인권위원회 (대표 : 진관스님, 한상범 교수)
주소 : 110-3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0층 16호
전화 : 02-745-1852 / Fax : 02-745-1854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 : 서준식)
주소 : 140-150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대표전화 : 02-715-9185 / Fax : 02-715-9186
PC ID : rights(천리안/하이텔)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 (대표 : 박정기)
주소 : 110-5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2동 651-30 한울삶
전화 : 02-763-4700, 761-1684 / Fax : 02-743-2835

천주교 인권위원회 (대표 : 김형태 변호사)
주소 : 100-022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1 가톨릭회관 3층
전화 : 02-777-0643, 771-7600(교 2463) / Fax : 02-775-
626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표 : 김상근 목사)
주소 : 110-701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8호

전화 : 02-744-3717 / Fax : 02-744-6189

PC ID : NOCHUMAN(천리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표 : 허창수 신부)

주소 : 706-600 대구직할시 경북체신청 직영우체국 R.C.O

Box 36호

전화 : 053-426-2533 / Fax : 053-422-1956

법과 인권 연구소 (대표 : 김동한)

주소 : 110-2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40 해영회관 901호

전화 : 732-9489 / Fax : 02-732-9490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장기수가족후원회

(대표 : 정귀남, 최현숙, 노진민)

주소 : 121-080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12-143

전화 : 02-719-2172 / Fax : 02-719-2173

이장형씨 석방을 위한 후원모임 (대표 : 남승택 신부)

주소 : 690-031 제주시 삼도1동 108-11 천주교제주교구청 교

육국

전화 : 064-51-0147 / Fax : 064-51-5531

사단법인 노동인권회관 (대표 : 박형규 목사)

주소 : 152-021 서울 구로구 가리봉1동 135-75

전화 : 02-858-5837.8 / Fax : 02-862-7283

PC ID : nbj(천리안), kimmunsu(하이텔)

노동정책연구소 (대표 : 박석운)

주소 : 140-160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127-1 우신빌딩 3층

전화 : 02-749-6052-4 / Fax : 02-749-6055

PC ID : A0011(천리안) / 0011(하이텔)

노동과 건강연구회 (대표 : 이경우 변호사, 김은희 간호사)

주소 : 152-05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106-4호 구로선경
오피스텔 703호

전화 : 866-9175 / Fax : 856-4385

PC ID : kwhsa(하이텔), HWHSA(천리안)

외국인노동자피난처 (대표 : 김재오 전도사)

주소 : 152-023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3동 148-40 정환빌딩 5층

전화 : 02-859-0430 / Fax : 02-858-7829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대표 : 전우섭 목사)

주소 : 110-470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8호

전화 : 02-744-1211 / Fax : 02-744-6189

양심선언군인전경지원대책위원회 (대표 : 김종일)

주소 : 110-5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1동 72-47 대전빌딩
201호

전화 : 02-766-8828 / Fax : 02-766-4979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대표 : 박정기)

주소 : 140-150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 02-715-9185 / Fax : 02-715-9186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대표 : 이효재, 윤정옥, 김희원)

주소 : 120-650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5번지 기독교사
회문제연구원 빌딩 305호

전화 : 02-365-4016 / Fax : 02-365-4017

사단법인 태평양전쟁 회생자유족회 (대표 : 김종대, 양순임)

주소 :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390-1 영월빌딩
203호

전화 : 02-795-3315-6 / Fax : 795-6400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 이미경, 한명숙, 이영순)

주소 : 100-391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2층

전화 : 02-274-2883, 279-6892, 273-9244 / Fax : 264-2778

PC ID : KWAU(천리안, 하이텔)

여성민우회 (대표 : 이경숙, 이금라, 정강자)

주소 : 100-391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전화 : 02-269-5763-5 / Fax : 02-269-5766

PC ID : A325(천리안)

한국 여성의 전화 (대표 : 신혜수)

주소 : 100-391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전화 : 02-269-2964 / Fax : 02-269-2966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대표 : 이영순)

주소 : 152-05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본동 409-54 여성복지
회관 내

전화 : 02-869-1347 / Fax : 02-869-1347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대표 : 최영애)

주소 : 137-600 서울특별시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

전화 : 02-576-7127-8(일반사무), 02-573-1888(위기상담),
02-529-4271-2(일반상담) / Fax : 02-576-7127

지역탁아소연합회 (대표 : 최현숙)

주소 : 110-391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전화 : 275-8505-6 / Fax : 275-8506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대표 : 김성재)

주소 : 137-06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1동 922-16 진일빌딩
2층

전화 : 02-521-5364 / Fax : 02-584-7701

PC ID : COHANDI(하이텔), zmission(천리안)

부 록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대표 : 조한익, 홍영진, 배기영, 원제환)

주소 : 120-070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69-4 2층

전화 : 02-362-0377 / Fax : 02-362-0378

PC ID : inyeeh(하이텔)

한국 노인의 전화 (대표 : 이성우)

주소 : 120-09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4동 35-5 3층

전화 : 02-722-8007, 02-723-8007 / Fax : 02-722-9187